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봉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0511

발의연월일: 2023. 3. 9.

발 의 자:전봉민·김도읍·김상훈

김용판 • 박대수 • 박성민

서일준 • 이종성 • 정동만

정운천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·구조, 필요한 인력·장비의 배치,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 관으로의 이송 등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는 현장지휘관의 자격과 역량을 평가 · 인증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러한 내용이 법률이 아닌 훈령(「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」, 소방청훈령 제262호)에 규정되어 있어, 법률로 상향조정이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 및 운영기관의 지정·취소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긴급구조 대응을 위한 우수한 현장지휘관 양성을 하려는 것임(안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의3 및 제5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2조의3(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 등) ① 소방청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는 현장지휘관(지역통제단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,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·인증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소방청장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·평가 운영기관(이하 "운영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  - ③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기준 및 운영·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제52조의4(지정의 취소) ① 소방청장은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 - 2.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52조의3(현장지휘관 자격인증
	제 운영 등) ① 소방청장은 긴
	급구조활동을 지휘하는 현장지
	휘관(지역통제단장 등 행정안
	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
	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
	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
	하고,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
	평가・인증하기 위하여 현장지
	휘관 자격인증제를 운영할 수
	있다.
	② 소방청장은 현장지휘관 자
	격인증을 위한 교육 및 평가를
	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
	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
	라 교육ㆍ평가 운영기관(이하
	"운영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
	수 있다.
	③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기준
	및 운영·신청절차 등에 필요한
	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
	다.
<u>&lt;신 설&gt;</u>	제52조의4(지정의 취소) ① 소방

청장은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